

의안번호	제65호
의결연월일	2022. 4. 21.

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04월 13일,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04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2년 04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맑은물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등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시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민복지 혜택 증대 및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우리 시의 취약 계층 지원 및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 ‘장애인’ ‘다자녀가정’ 및 ‘소방용수 구경요금’ 을 추가(안 제40조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감면의 대상, 방법, 범위를 조례에 마련하여 기존의 조례안 신설 및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